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3,608,995	11,208,270
일반회계	359,104,903	10,773,147
특별회계	14,504,092	435,123
기타특별회계	14,504,092	435,12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25,961	63,77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65,219	28,95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45,219	46,357
주차장특별회계	8,958,116	268,74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03,756	9,113
재정비축진특별회계	598,014	17,940
기반시설특별회계	7,807	2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01,38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100,000천원으로 한다.